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68호) 공포 알림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총리령 제1814호, '23.3.2.) 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주요 개정 내용	비고
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든 식육가공품의 판매 범위 확대 ▪ 우유류판매업 배달망으로 온라인 판매 포장육 배송 허용 ▪ 해동육 공급 업종 확대 및 냉장육의 실시적 예냉 처리 허용 ▪ 식육판매업 보관 시설에 밀봉된 축산물·식품 동시 보관 허용 ▪ 영업자 및 종업원 위생교육 합리적 조정 ▪ 가축이력관리제도 적용 축산물의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의무 폐지 ▪ 식육판매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영업장 일부공유 허용 	-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 대상 축산물 기준 정비 ▪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처분 규정 정비 	-
기타 정비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시료 채취·수거 등 수거증 발급 기준 명확화 ▪ 민원 편의를 위한 민원서식 개선 ▪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 표시대상 제품 관련 정보 등 포함(별지제28호) 	* 별지제28호서식 '23.7.1.부터 시행

2. 동 개정령은 2023년 3월 2일자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68호).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중앙부처(법령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동물검역과장), 시·도 축산물 관련 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관련 단체

주무관 남경우 사무관 김충현 축산물안전정책과전결 2023. 3. 2.
장 김철희

협조자

시행 축산물안전정책과-1498 (2023. 3. 2.)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축산물안전정책과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3247 팩스번호 043-719-3270 / nkw98@korea.kr / 대국민 공개

힘내라 대한민국!